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1.(월) 11:00, (지면) 2024. 1. 2.(화) 조간 배포 2023. 12. 29.(금) 오후

[2024년 해양수산부 정책돋보기]

#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특별점검한다

- 설 명절 앞두고 1월 2일부터 상습 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월 2일(화)부터 1월 31일(수)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35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약 7억 원을 선원 89명에게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선원은 '임금채권보장 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은 사업체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 등이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줄 수 있는 보험이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40)
		담당자	사무관	김행숙 (044-200-5743)

**□ 추진 개요**

- (목적) 명절 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예방, 기존 체불 임금 적극 해소 등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기간) '24.1.2.(화) ~ '24.1.31.(수)(4주 간)
- (점검반) 11개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편성·운영
- (중점 점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

**□ 주요 내용**

- 취약업체의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수시 파악
  - 체불임금 발생사실 인지 즉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대책 강구
  -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이행 실태 파악 철저
- 기존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임금 청산 유도
  - 소유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우선변제 이행토록 촉구
  - 부도업체(기업회생절차 포함)는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을 별도 지정 관리
  - 임금 지급 시까지 사업장 방문 등 취약업체 동향파악 정례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 지원(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등)
  - 외국인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에 대하여도 집중 관리
-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

## □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란?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선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선원법 상의 임금, 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적 지원

## □ 지원대상

- 「선원법」 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선원
  - \* 선원법 상 선원: 상선 5톤이상, 어선 20톤이상의 선박에 승무한 사람(선원법 제3조)
- 「선원법」 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선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선원가족

##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사전 사건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반드시 상담을 통한 사건심사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 작성 및 소송 위임

## □ 제출서류

- (임금·퇴직금 체불 시)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금품확인원, 신분증, 인장 등
- (재해보상 사고 관련 시) 진단서 등 재해보상 소명 서류,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신분증, 인장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 ☎ 국번없이 13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지원 담당 ☎ 051-996-3647